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03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 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33,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2

가. [redacted]시 B 임야 23,063㎡와 C 임야 11,70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 E, F, G, H, I, J의 공유(지분 각 7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그런데 D, E, F(2002.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인 원고, G의 아들인 K은 2010. 12. 15.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D, E, F, G의 공유지분을 자신들의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L 합유(재산) 약정(이하 '이 사건 합유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17.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합유지분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 9.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재산세 54,960원, 지방교육세 10,990원 합계 65,950원, 2013년 귀속 재산세 55,050원, 지방교육세 11,010원 합계 66,060원, 2014년 귀속 재산세 56,030원, 지방교육세 11,210원 합계 67,240원, 2015년 귀속 재산세 55,530원, 지방교육세 11,110원 합계 66,640원, 2016년 귀속 재산세 56,200원, 지방교육세 11,240원 합계 67,44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2

원고가 2010. 12. 17. 이 사건 합유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1990. 1. 1.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고의 합유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제5호 (나)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를 들고 있으며, 제6항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1990. 1. 1.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약 8년 동안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다가 2010. 12. 17.에 이르러서야 변경계약(이 사건 합유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2

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M, N, O, P, Q)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유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망인의 공유지분을 단독상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정한 '1990. 1. 1.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합유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박종환

판사 이영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2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2

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끝.